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3월 12일

권 유 자: 성 명: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주 소: 경기 과천시 코오롱로11
 전화번호: 032-420-9111

작 성 자: 성 명: 권태은
 부서 및 직위: 재무팀 / 대리
 전화번호: 032-420-9965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1년 03월 12일	라. 주주총회일	2021년 03월 29일
마. 권유 시작일	2021년 03월 17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한 필요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관리기관)	미래에셋대우(주)
(인터넷 주소)	https://v.miraeassetdaewoo.com/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미래에셋대우(주)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https://v.miraeassetdaewoo.co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input type="checkbox"/> 정관의변경			
<input type="checkbox"/> 이사의선임			
<input type="checkbox"/>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input type="checkbox"/> 이사의보수한도승인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보통주	84,095	0.33	본인	자기주식으로 의결권 없음

- 2020년 12월 31일 기준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은 보통주 84,095, 우선주 4,722주 입니다.

- 주식 소유 비율은 당사가 발행한 보통주(25,210,438주) 대비 비율입니다.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코오롱	최대주주	보통주	18,964,708	75.23	최대주주	-
오운문화재단	재단	보통주	130,205	0.52	재단	-
안효상	발행회사 임원	보통주	16,206	0.06	발행회사 임원	-
이웅열	기타	보통주	96,522	0.38	기타	-
박문희	계열사임원	보통주	233	0.00	계열사임원	-
윤창운	발행회사 임원	보통주	38,727	0.15	발행회사 임원	-
장동권	발행회사 임원	보통주	41,804	0.17	발행회사 임원	-
이철승	계열사임원	보통주	43	0.00	계열사임원	-
정공환	계열사임원	보통주	8,304	0.03	계열사임원	-
이인성	계열사임원	보통주	381	0.00	계열사임원	-
김응욱	계열사임원	보통주	492	0.00	계열사임원	-
김영범	계열사임원	보통주	787	0.00	계열사임원	-
방기정	계열사임원	보통주	1,277	0.01	계열사임원	-
이일우	계열사임원	보통주	700	0.00	계열사임원	-
류재익	계열사임원	보통주	2,117	0.01	계열사임원	-
윤재은	발행회사 임원	보통주	3,049	0.01	발행회사 임원	-
김기덕	계열사임원	보통주	489	0.00	계열사임원	-
나종현	계열사임원	보통주	455	0.00	계열사임원	-
이재혁	계열사임원	보통주	335	0.00	계열사임원	-
조현철	계열사임원	보통주	1,156	0.00	계열사임원	-
강창희	계열사임원	보통주	655	0.00	계열사임원	-
계	-	-	19,308,645	76.59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이재수	보통주	0	직원	직원	-
이우현	보통주	0	직원	직원	-
권태은	보통주	0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1.03.12	2021.03.17	2021.03.29	2021.03.29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0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중 권유자를 제외한 주주 전체
--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원활한 주주총회 진행을 위한 필요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2021년 3월 17일~2021년 3월 28일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미래에셋대우(주)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s://v.miraeassetdaewoo.co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기간 중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 (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 확인용 본인확인 수단의 종류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전자거래 범용 공인인증서)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 홈페이지	https://www.kolonglobal.com	홍보센터->공지 및 뉴스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전자우편을 통해 참고서류 및 위임장용지를 수령하고자 하는 피권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한해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정기 주주총회 전까지 우편 및 팩스로 위임장 수여 가능하며, 아래 주소로 발송 부탁드립니다.
 • 주소 : (21984) 인천 연수구 송도과학로 32, 테크노파크 IT 센터 S동 코오롱글로벌 재무팀
 • 업무상 연락처 : (TEL) 032-420-9965 (재무팀 권태은 대리)
 (FAX) 032-420-9929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1년 3월 29일 오전 9시 30분
장 소	인천 연수구 송도과학로32, 테크노파크 IT 센터 5층 중회의실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	---------

전자투표 기간	2021년 3월 17일~2021년 3월 28일
전자투표 관리기관	미래에셋대우(주)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https://v.miraeassetdaewoo.co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단, 마지막 날인 3월 28일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의 감염 및 전파 예방을 위하여 총회장 입장 시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발열체크를 진행할 예정이며, 당일 발열, 기침 증세가 있으신 주주님은 주주총회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총회장 입장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행사가 필요하신 주주님께서서는 전자투표와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장 폐쇄 등 긴급상황 발생시 총회의 일시, 장소 등에 대한 결정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였으며, 변경사항 발생시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8조의3(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의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8조의3(동등배당) 이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상법 350조 제3항이 삭제됨에 따라 배당기준일 및 주식의 발행 시기와 관계 없이 모든 주식에 대하여 동등 배당하는 취지로 내용을 정비
제9조(명의개서대리인)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9조(명의개서대리인)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이 정한 관련 업무규정에 따른다.	-전자등록제도에 도입에 따른 증권에 대한 명의개서대행업무 사라진 현황을 반영
제10조 <삭제>	제10조(주주명부 작성 비치) ① 이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이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전자증권법 제37조 제6항의 규정 내용 반영 -전자증권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3호 가목에 의거 회사가 소유자명세의 작성요청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p>제14조(주주명부 폐쇄)</p> <p>①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 변경을 정지한다.</p> <p>② 이 회사는 매 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로 하여금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p> <p>③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한 후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일정한 기간에 걸쳐 명의개서 등을 정지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의개서 정지와 기준일을 함께 정할 수 있다.</p>	<p>제14조(기준일)</p> <p>①이 회사는 매결산기 최종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p> <p>②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의 2주간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p>	<p>-상법 개정에 따라 기준일을 결산기말이 아닌 날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1월중의 날을 정할 수 있도록 기준일 관련 규정을 정비</p>
<p>제15조의2(전환사채의 발행)</p> <p>⑥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8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5조의2(전환사채의 발행)</p> <p>⑥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p>	<p>-전환사채의 전환에 따라 발행일에 관계 없이 동등하게 배당이 지급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자지급시기 이후 전환일까지 발생할 수 있는 이자에 대한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을 분명히 함</p>
<p>제16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p> <p>⑥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8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6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p> <p>⑥(삭 제)</p>	<p>-제10조의4의 조정에 따라 배당기산일 준용규정을 삭제</p>
<p>제16조의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p>	<p>제16조의2(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p>	<p>-전자등록이 의무화되지 않은 사채에 대하여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p>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다만, 사채의 경우 법령에 따라 전자등록이 의무화된 상장사채등을 제외하고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p>제39조(감사위원회의 구성)</p> <p>④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p> <p>⑤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p> <p>(신 설)</p> <p>(신 설)</p>	<p>제39조(감사위원회의 구성)</p> <p>④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p> <p>⑤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p> <p>⑥감사위원회위원은 상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p> <p>⑦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p>	-감사위원 분리선출 관련 개정 상법 제542조의12 제2항 반영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p>⑥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p>	<p>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p> <p>⑧(좌 동)</p>	
<p>제45조(이익배당) ②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p>	<p>제45조(이익배당) ②제1항의 배당은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p>	<p>-상법 개정에 따라 배당기준일을 결산기말이 아닌 날로 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의결권행사 기준일에 맞추어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p>
<p>제45조의2(분기배당) ④ 사업연도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 (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행사, 주식매수청구권행사로 인한 신주발행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p>	<p>제45조의2(분기배당) ④(삭 제)</p>	<p>-배당기준일 및 주식발행 시기와 관계 없이 모든 주식에 대하여 동등배당을 하는 것으로 제10조의4를 조정함에 따라 중간배당시 배당기산일을 직전 사업연도말에 소급하는 규정을 삭제</p>
-	<p>부 칙 제47조의24(부칙) 이 정관은 202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p>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의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장동권	59.10.28.	-	-	코오롱글로벌 (계열회사) 임원	이사회
성시웅	53.05.02	○	분리선출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2)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세부경력·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장동권	코오롱글로벌(주) 부사장	14.04~14.12	코오롱글로벌 건설혁신 본부장	-
		15.01~現	코오롱글로벌 건설부문 부문장	
성시웅	변호사	09.02~17.03	법무법인 성도, 이지스 대표 변호사	-
		19.04~現	큐브앤컴퍼니 사외이사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1. 성시웅

성시웅 후보자는 변호사로서 상법상 사외이사 의무와 책임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코오롱글로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상정되는 다양한 안건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시각으로 의사결정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코오롱글로벌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1. 장동권

장동권 후보자는 건설사업에 정통하고 조직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리더십을 바탕으로 코오롱글로벌의 주요사업인 건설사업부문 총괄 책임자로 근무해왔음. 또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코오롱글로벌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2. 성시웅

성시웅 후보자는 변호사로서 법률과 관련된 해박한 지식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사회에 상정될 다양한 안건에 대해 전문적인 제언과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확인서

확 인 서

후보자 본인은 본 서류에 기재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조 제3항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2021 년 2 월 24일

보고자 : 성 시 응


(서명 또는 날인)

확인서_성시응

확 인 서

후보자 본인은 본 서류에 기재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조 제3항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2021 년 2 월 24일

보고자 : 장 동 권 (서명 또는 )

확인서_장동권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없음.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생년월일·추천인·최대주주와의 관계·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성시웅	53.05.02	○	분리선출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1)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세부경력·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성시웅	변호사	09.02~17.03	법무법인 성도, 이지스 대표 변호사	-
		19.04~現	큐브앤컴퍼니 사외이사	
-	-	-	-	-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 추천 사유

1. 성시웅
변호사로서 법률과 관련된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대주주 및 다른 이사로부터 독자적으로 견제, 감시감독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됨.

확인서

확 인 서

후보자 본인은 본 서류에 기재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3-15조 제3항 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항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2021 년 2 월 24 일

보고자 : 성 시 응

(서명 또는 날인)

확인서_성시응_1

※ 기타 참고사항

상기 감사위원 선임의 건은 상법 제542조의 12에 의거, 분리선출 하는 감사위원입니다.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7 (4)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50억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9 (5)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26억원
최고한도액	50억원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